



# 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강화를 통한 자금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## 1. 개정근기

- 중소기업청의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변경 알림」  
(기업금융과-14, '16.01.05.)

## 2.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 <붙임>문서 참조

가. 일반창업지원과 우대창업지원 대상으로 구분 운용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대상 기업	<p>아래의 1.~4.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</li> <li>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</li> <li>신용평가시스템(소액심사신용평가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)상 "CCC" 등급 이상</li> <li>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</li> </o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중진공) 청년창업사관학교</li> <li>(창진원) 스마트벤처창업학교,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"창업아이템 사업화" 과정 창업맞춤형 사업화 과정</li> </ul> </li> <li>테크노파크, 창업보육센터,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</li> <li>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,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 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상 평가 등급이 "B 등급" 이상인 기업</li> </ol> </div>	<p><b>① 일반창업지원</b></p> <p>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</li> <li>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</li> <li>신용평가시스템(소액심사신용평가표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)상 "CCC" 등급 이상</li> </ol> <p><b>② 우대창업지원</b></p> <p>위 "① 일반창업지원 대상기업"으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중진공) 청년창업사관학교</li> <li>(창진원) 스마트벤처창업학교,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"창업아이템 사업화" 과정, 창업맞춤형 사업화 과정</li> </ul> </li> <li>테크노파크, 창업보육센터,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</li> <li>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,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 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상 평가 등급이 "B 등급" 이상인 기업</li> </ol> </div> <p><b>4) NEP(신제품) 인증기업, 성능인증기업</b></p>

## 나. 보증한도 사정방법 변경

구 분	변경전	변경후														
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	- 1억원 이하 ■ 소평모형 기준시 : 한도 x 200% ■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1~2등급</th> <th>3~4등급</th> <th>5~6등급</th> <th>7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만원 이내</td> <td>4천만원 이내</td> <td>3천만원 이내</td> <td>2천만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1~2등급	3~4등급	5~6등급	7등급	5천만원 이내	4천만원 이내	3천만원 이내	2천만원 이내	<b>① 일반창업지원</b> - 1억원 이하 ■ 소평모형 기준시 : 한도 x 100% ■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1~3등급</th> <th>4~6등급</th> <th>7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천만원 이내</td> <td>3천만원 이내</td> <td>2천만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1~3등급	4~6등급	7등급	4천만원 이내	3천만원 이내	2천만원 이내
	1~2등급	3~4등급	5~6등급	7등급												
5천만원 이내	4천만원 이내	3천만원 이내	2천만원 이내													
1~3등급	4~6등급	7등급														
4천만원 이내	3천만원 이내	2천만원 이내														
	- 1억원 초과 ■ 매출액기준 x 150%("B"등급 이상) ■ 매출액기준 x 140%("CCC"등급)	<b>② 우대창업지원</b> - 1억원 이하 ■ 소평모형 기준시 : 한도 x 200% ■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1~3등급</th> <th>4~6등급</th> <th>7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천만원 이내</td> <td>4천만원 이내</td> <td>3천만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- 1억원 초과 ■ 매출액기준 x 150%("B"등급 이상) ■ 매출액기준 x 140%("CCC"등급)	1~3등급	4~6등급	7등급	5천만원 이내	4천만원 이내	3천만원 이내								
1~3등급	4~6등급	7등급														
5천만원 이내	4천만원 이내	3천만원 이내														

\* 매출액 기준 : 당기매출액의 1/3, 최근 4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의 1/3

### 3. 시행일 : 2016년 1월 11일(월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- 붙 임 : 1.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  
 2.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  
 3.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 
 4.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 방법 1부. 끝.

---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협조자 전산지원부장

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23 ( 2016.01.12. ) 접수 ( 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  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[pym1222@seoulshinbo.co.kr](mailto:pym1222@seoulshinbo.co.kr) / 공개